



# 사 규

## 이사회 규정

사규번호	HCS-P-BA002		
제정일자	2002.09.15		
개정일자	2023.10.27		
개정번호	8	페이지	1/6

### [ 목 차 ]

- 제1조(목적)
- 제2조(적용범위)
- 제3조(권한)
- 제4조(구성)
- 제5조(의장)
- 제6조(소집)
- 제7조(제안)
- 제8조(성립 및 결의방법)
- 제9조(결의사항)
- 제9조의 2(보고사항)
- 제10조(감사의 출석 및 의견진술)
- 제11조(배석 및 보고)
- 제12조(의사록)
- 제13조(간사)
- 제14조(전문가 조력)
- 부 칙

### [ 제/개정 이력 및 승인 ]

개정번호	제/개정일	작성팀	작성일자	작성	검토	승인
						최신본 승인
						이사회 의결 완료
개정번호	제/개정일	작성팀	작성자	제/개정내역		비 고
0	2002.09.15					
1	2003.03.21					
2	2006.08.25					
3	2007.01.25					
4	2013.03.11	전략기획팀	정윤직			
5	2015.01.01	전략기획팀	정윤직			
6	2019.01.16	기획팀	김대성	관련법령 개정시 규정의 당연 개정사항 대표이사 위임		
7	2021.03.30	기획팀	김민철	이사회의장 선출방법 및 소집권 규정 개정		
8	2023.10.27	경영지원팀	박창규	업무수행상 필요시 외부전문가 조력 신설		

	<b>사 규</b>	사규번호	HCS-P-BA002		
		제정일자	2002.09.15		
	<b>이사회 규정</b>	개정일자	2023.10.27		
		개정번호	8	페이지	2/6

**제 1 조(목적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(적용범위)**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로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 3 조(권한)**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결의한다.

**제 4 조(구성)**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**제 5 조(의장)**

-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- ② 의장의 임기는 해당 이사 임기 만료시까지로 한다.
- ③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내이사, 기타비상무이사, 시외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사내이사의 서열은 직제규정상 임원의 직무 서열에 따른다. 다만 동일 서열자가 복수인 경우 선선임자,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 6 조(소집)**

- ① 이사회는 매 분기 1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회사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그 횟수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또한, 각 이사가 요청할 경우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다만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 유고시 제 5 조 3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였는데도 대표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각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 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개최일시, 장소 및 회의안건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 7 조(제안)**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담당 임원의 결재를 받아 제 1 호 서식에 의한 이사회 상정(안)을 이사회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	사 규	사규번호	HCS-P-BA002		
		제정일자	2002.09.15		
	이사회 규정	개정일자	2023.10.27		
		개정번호	8	페이지	3/6

### 제 8 조(성립 및 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는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상정된 의안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당해 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 제 9 조(결의사항)

-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결의한다.
  1. 연간 사업(경영)계획의 확정 및 예산의 확정
  2. 신규투자 또는 신규사업의 확정
  3. 상법 또는 정관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
    - 3.1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총회 상정안건
    - 3.2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승인
    - 3.3 신주 및 사채의 발행
    - 3.4 주주이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
    - 3.5 신주배정시 단주 처리방법
    - 3.6 대표이사,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선임과 변경, 이사의 담당업무. 단, 대표이사 이외의 직위에 대한 임기내 변경 및 임기내 이사의 업무분장 변경은 제외한다.
    - 3.7 국내외에 지점, 출장소, 사무소 및 현지법인의 설치, 이전, 폐지
    - 3.8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 업무의 범위
    - 3.9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범위내의 등기 임원 이외 임직원에게 대한 주식 매수선택권 부여
    - 3.10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
    - 3.11 전환사채의 전환가액, 전환청구기간의 조정 및 신주인수권사채의 발행 가액,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의 조정
    - 3.12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사채 발행의 대표이사에 위임
    - 3.13 이사의 보수



## 사 규

사규번호	HCS-P-BA002		
제정일자	2002.09.15		
개정일자	2023.10.27		
개정번호	8	페이지	4/6

### 이사회 규정

- 3.14 상법 제 397 조(경업금지), 제 397 조의 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), 제 398 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 및 542 조의 9 제 3 항(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)의 규정에 따른 승인
- 3.15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
- 3.16 필요시 이익배당의 지급시기
- 3.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, 처분
- 3.18 자기주식의 소각
- 3.19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
- 4. 타인 또는 타기업체에 대한 채무의 보증
- 5.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주식의 매입
- 6.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자금의 차입 또는 대여
- 7. 제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. 단, 국가의 법령 개정에 따른 사내 규정의 당연 개정 필요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
- 8. 자본금 10%이상의 자산 취득 및 처분
- 9. 중요한 소송에 관한 사항
- 10.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급 임원대우의 선임에 관한 사항
- 11. 기타 담당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
- ② 이사회는 제 1 항을 결의함에 있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#### 제 9 조의 2(보고사항)

-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이사회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기타 법령 등에 의한 이사회 보고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 10 조(감사의 출석 및 의견진술)**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

#### 제 11 조(배석 및 보고)

- ① 의장은 제출안건과 관련된 관계부서장을 이사회에 배석하게 하여 관련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전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하는 부서장은 보고자료 사본 1 부를 이사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	<b>사 규</b>	사규번호	HCS-P-BA002		
		제정일자	2002.09.15		
	<b>이사회 규정</b>	개정일자	2023.10.27		
		개정번호	8	페이지	5/6

**제 12 조(의사록)**

- ① 간사는 이사회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그 사본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
**제 13 조(간사)**

- ① 이사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이사회 주관부서 장이 된다.
- ②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**제 14 조(전문가 조력)** 이사회 또는 (사외)이사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 판단되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**부 칙**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사 규

사규번호 HCS-P-BA002

제정일자 2002.09.15

## 이사회 규정

개정일자 2023.10.27

개정번호 8 | 페이지 6/6

<서식 제 1호>

## 이사회 상정(안)

의안 제 호

1. 건 명:

2. 결의주문:

3. 제안사유:

4. 제안근거: